

입법예고안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2005. 6

환 경 부

## 환경부 공고 제2005-143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1. 개정이유

2004. 12. 31.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293호)됨에 따라 동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장소음·진동규제, 보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2조, 제5조, 제13조).

나. 항공법시행규칙의 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항공기소음영향도가 75WECPNL로 강화(2004.7.3)됨에 따라, 본 시행령의 기타지역(소음피해예상지역) 항공기소음한도를 80에서 75WECPNL로 강화하여 동일하게 함(안 제10조의2).

다.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를 위한 소음도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위임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수행중인 자동차소음인증업무 이외에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안 제12조제1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전화번호 02-2110-6814, FAX 02-504-5472, 전자우편 : jjc5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항”을 “「주택법」 제2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제5조제1항중 “법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를 “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로 하고,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기타지역은 80으로 한다”를 “기타지역은 75로 한

다”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

제12조제2항중 제11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과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부과권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각각 “「초·중등교

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5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  
다.

제6조의2제2항제8호다목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항공법시행령”을 “「항공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법」”으로 한다.

제14조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의3 관련)

기술인력	검사장 및 시설·장비
기술직 2인 기능직 3인	가. 검사장 : 면적900m <sup>2</sup> 이상(30m×30m이상) 나. 시설·장비 (1) 멀티테스터 1대 (2) 표준음 발생기 (가) 200~500 Hz 1대 (나) 1,000 Hz 1대 주: (가) 및 (나)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3) 마이크로폰 6개 (4) 녹음 및 기록장치 1대(6 채널용) (5) 주파수분석장비 ; 50~8,000 Hz 범위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주: (4) 및 (5)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6) 삼각대 6대(높이 10 m 이상)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7) 기준음원(KS A ISO 6926의 방법으로 교정된 음원)

(1) 기술직

- (가) 소음·진동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및 소음·진동관련 분야의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기사로서 소음·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나) 소음·진동관련 분야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산업기사로서 소음·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기능직

- (가) 환경 및 기계 분야의 기능사로서 소음·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항공기소음의 한도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의 한도는 공항주변인 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 (WECPNL) 90으로 하고, 기타지역은 80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신 설>

제12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략)

<신 설>

5. ~ 7. (생략)

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

--.

제10조의2 (항공기소음의 한도 등)

① -----  
-----  
----- 기타지역은 75로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

----- 자동차 및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

5. ~ 7. (현행과 같음)

②-----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0. (생략)

11. 법 제61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12. (생략)

제13조(보고)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 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12.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제15조(과태료의 부과) ①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  
-----  
-----  
-----.

② 부과권자-----

